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請願審査規程改正規程案

審 査 報 告 書

1992. 6. 26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2. 6. 24 (정종태의원 외 6인)

나. 회부일자 : '92. 6. 25

다. 상정일자 : 제1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 ('92. 6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종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청원인으로 부터 청원서가 제출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심사 하였으나, 이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도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청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됨.

나. 주요골자

○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함. (안 제2조 제1항)

○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(안 제2조 제2항)

○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함과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함 (안 제6조)

○ 청원이 접수된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유재한)

청원심사규정은 자치구 의회가 출범하기전 청원에 대한 심사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원심사규정을 우리구 의회에서 심사하는데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으로 구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 또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고 사료됩니다.

청원은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권을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내무부 준칙(안)을 토대로 청원법과 지방자치법등 상임법에 위반하여서도 아니되는 업무라고 생각되며 본 개정안을 법의 개정에 따른 전문 개정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별 첨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 1부.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請願審査規程改正規程案

의 안 번 호	79

발 의 년 월 일 : 1992년 6월 24일
발 의 자 : 정종태의원외6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개정('91. 12. 31 법률 제4464호)과 동법시행령('92. 2. 15 대통령령 제13586호)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심사 하였으나, 이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도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청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함. (제2조 제1항)

○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 (제2조 제2항)

○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함과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·회부함. (제6조)

○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 (제15조)

3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: 제24조

4. 예산조치 수반사항

○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제 정 안 : 별 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규정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請願審査規程改正規程(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.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청원서의 제출)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(이하 "의원"이라 한다.)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청원서 보완요구) 의회의장 (이하 "의장"이라 한다.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재판에 간섭하는 것.
2.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.
3.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.
4. 법령에 위배되는 것.

제 5 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에 회부하거나,

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한다.

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·성명·청원의 취지·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.

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에 회부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청원인등 진술)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·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(제척과 회피)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 10 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
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

제 11 조(심사보고)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

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

1.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2.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제 12 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

1.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
2.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
3.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
4.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
5.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

제 14 조(청원의 철회)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.

제 15 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)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6 조(징　　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 17 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　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 접수된 청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(별지제1호서식)

청 원 소 개 의 견 서

청 원 건 명				
청 원 인	주 소			
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
소 개 의 원	인			
소 개 년 월 일				

소개의견

(별지제2호서식)

청 원 철 회 요 구 서

청 원 건 명				
청 원 인	주 소			
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
소 개 의 원			인	
청원제출일자		청원철회일자		

철회요구사유